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78호)

기획재정부에서는 『관세법』 제9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제도의 감면기간 및 적용대상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제도개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감면”이란 오염물질 배출방지·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시설·장비와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 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II. 개정내용

기존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52개 물품 중 유황과립장치 등 9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43개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적용하고, 코로나 19 위기 극복 및 공장자동화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기한을 1년 연장 예정입니다.

1) 감면대상 축소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물품 52개 물품 중 다음 9개 물품을 감면 적용대상에서 삭제

NO	물품	HS CODE
1	유황과립장치	8419.89
2	세척기	8422.20
3	멸균기	8422.20
4	카트리지 라벨러	8422.30
5	수평 머시닝 센터	8457.10
6	기어체커	9031.80
7	카트리지 이물질검사기	9031.80
8	엔진다이아모테스트기	9031.80
9	틈새 선별기	9031.80

2) 감면기간 연장

중소제조업체 또는 중견기업이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감면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현 행	개 정 안
<p>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p> <p>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p> <p>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p> <p>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p> <p>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50</p>	<p>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p> <p>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p> <p>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p> <p>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p> <p>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50</p>

I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1년 12월 13일

2) 제출방법

- (1) 통합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 (2)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재부로 제출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jskim00@korea.kr
- 팩스 : 044-215-8075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법령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2] (조문별 개정 이유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Contact



소유훬 관세사

T 02-6011-3012
E yhso@esein.co.kr



성단샘 팀장

T 02-6011-3021
E dsseong@esein.co.kr

SEIN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1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